아름다운 변화 양주

【검토보고서】

2015. 10. 20(화)
제262회임시회

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양주시의회
YANGJU CITY COUNCIL

【전문위원 최영인】

양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과

○ 제안자 : 양주시장(청소행정과)
○ 제출일 : 2015년 10월 7일
○ 검토일 : 2015년 10월 8일

2. 제안이유

○ 청소행정 효율화 및 청소재정 자립도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환경부의 방침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○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의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거 2006년이후 동결된 종량제봉투 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함.
○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의 RFID 배출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, 또한 관련 부서의 법령 및 지침 개정사항과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대책사업을 추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대한 적합여부 검토사항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조항을 삭제함 (안 제9조)
○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위탁방식을 경쟁계약의 근거 규정을 신설(안 제15조)
○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판매가격과 공동주택의 음식물처리 수수료를 [별표4]와 같이 개정(안 제18조)
○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을 현재의 RFID 단독방식에서 납부필증 부착방식을 추가하고, 무상 보급한 노후화 된 RFID장비를 교체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(안 제13조)
○ 전입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며, 또한 공공용봉투 제작의 근거 규정을 마련(안 제21조)
○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에 기재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삭제하고, 완전잔류형 보안스티커 방식으로 개선(안 제16조)
○ 종량제봉투의 용량·색상 및 두께를 [별표5]와 같이 개정(안 제19조)

4. 검토의견

가. 법령검토

○ 본 조례는「폐기물관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위임조례이며

○ 법령의 위임 범위 안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상 일부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나. 정책검토

○ 종량제봉투 가격이 2006년 이후 동결된 반면 청소비용은 매년 10%내외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청소자립도 제고를 위한 종량제봉투 가격을 20% 인상하였으며 양주시의 종량제 봉투 가격은 경기도 평균보다 약간 낮은편으로 시군동향을 보았을 때 점차 인상하는 추세임.

○ 양주시의 청소자립도는 29%로 종량제봉투의 가격 인상으로 5%정도의 상승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※ 인접시군 종량제봉투 가격비교

연번	시군	1	2	3	5	10	20	50	100	비 고
	경기도	34	63		135	256	506	1,264	2,528	
1	의정부시	30			160	280	560	1,500	3,000	
2	동두천시			70		250	550	1,250	2,500	
3	의정부시	30			160	280	560	1,500	3,000	
4	파주시		90	120	190	350	670	1,630	3,230	
5	포천시			70		280	560	1,400	2,800	
6	연천군			70		290	560	1,340	2,750	
7	양주시			70	120	250	500	1,200	2,500	

※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비교

구 분(L)		현 행(원)	개 정 안(원)	비 고
1			30	
3		70	90	
5		120	150	
10		250	300	
20		500	600	
50		1,200	1,500	
100		2,500	3,000	
음식폐기 수수료	RFID	77원(kg당)	92원(kg당)	
	납부필증		11,040원(120L당)	

○ 현재 양주시의 공동주택단지의 음식폐기물 배출방식인 RFID방식은 장비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주민의 이용불편 및 유지관리에 따른 보수비용, 인건비, 카드제작 등 총1억6천만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발생하며 시범사업의 종료로 해당공동주택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함에 따라 조례안에서는 납부필증 부착방식을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납부필증 부착방식을 체택할 경우 공동주택 세대별 총합요금을 세대별로 균등분할하여 납부하게 됨.

○ 마을 정화활동의 활성화 유도 및 무단투기쓰레기 처리를 위한 공공용봉투 제작은 주민들의 자체 정화활동을 위해 바람직하나 무분별한 공공용봉투 배부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.

다. 내용검토

○ 현행 조례 제9조에서는 시장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와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의 적합여부 검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관련 업무는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사무로

○ 관련업무의 처리는 시장의 권한에 해당되어 업무처리상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하여야하며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함.

○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5조에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공개경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재정누수 차단을 위하여 안 제15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, 운반 대행료 정산 및 부당청구시 환수규정을 마련하였음.

○ 안 13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음식폐기물 배출방식을 RFID방식 및 납부필증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공동주택별 설문조사 결과 납부필증 방식을 요구하는 주택들도 33개단지 정도되어 선택권을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.

○ 안 제21조 제6항에서는 전입자의 기존 타시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는 환경부「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」에 따른 것으로 전입자의 기존 지역 봉투 사용에 있어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됨.

라. 재정 검토

○ 노후화된 RFID 장비의 교체를 위한 사전조사 결과 87개단지 중 35개단지 190대의 교체요구가 있어 이에 따른 장비 구입비의 50%인 90만원을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2017년까지 2년간 180,0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.

마. 형식검토

○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.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음.

바. 절차검토

○ 입법예고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음.

사. 의정협의회 결과

○ 제19차 의정협의시 의견을 반영하여 종량제 봉투의 지원대상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모두 포함시켰으며 (안 제25조)

○ 공동주택 음식물배출 납부필증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(안 제21조의2) 종량제봉투의 가격인상을 2016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여 유예기간을 두었음.